

교양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08.1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더:함교양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발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구성,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1.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의 실현과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, 개편 관련 업무
2. 더:함교양대학 내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관련 업무
3.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 수업가이드 개발 관련 업무
4. 이 외에 본교 교양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, 개편에 필요한 제반사항

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더:함교양대학 부학장, 창의교양학부 학부장 및 혁신융합학부 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당연직, 외부자문위원 및 학생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더:함교양대학 부학장으로 하고, 더:함교양대학 창의교양학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간사는 기초교양교육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

제5조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

-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②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교양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, 개편안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.

부 칙(2020.08.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2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